

1998. 5.

제76회 임시회

**'98 제1회 추가경정 사회산업국 예산안
검 토 보 고 서**

사 회 도 시 위 원 회

(전문위원 박 홍 표)

198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회산업국 세입·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

본 예산안은 1998년 5월 4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
동년 5월 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

□ 199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·세출예산(안)

(단위 : 천원)

	'98 제1회 추경예산(안)	당초예산액	증 감
총 액	78,347,276	71,656,626	6,690,650
일반회계	67,623,257	61,476,404	6,146,853
특별회계	10,724,019	10,180,222	543,797

□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(안)

(단위 : 천원)

	'98 제1회 추경예산(안)	당초예산액	증 감
총 액	45,722,894	41,341,871	4,381,023
일반회계	34,998,875	31,161,649	3,837,226
특별회계	10,724,019	10,180,222	543,797

□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

○ 세출예산(안)

(단위 : 천원)

	'98 제1회 추경예산(안)	당초예산액	증감
총 액	34,998,875	31,161,649	3,837,226
사회산업국소관	25,945,143	23,685,058	2,260,085
도시국소관	9,053,732	7,476,591	1,577,141

○ 사회산업국 부서별 세출예산(안)

(단위 : 천원)

	'98 제1회 추경예산(안)	당초예산액	증 감
사회복지과	6,745,108	5,651,962	1,093,146
가정복지과	9,546,313	8,882,013	664,300
환경보호과	557,834	377,621	180,213
청소행정과	8,479,316	8,086,191	393,125
위 생 과	36,919	45,191	△ 8,272
지역경제과	579,653	642,080	△ 62,427

□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

○ 총괄표

(단위 : 천원)

	'98제1회추경예산안	당초예산액	증감
총 액	10,724,019	10,180,222	543,797
사회산업국소관(의+폐)	8,519,238	8,117,675	401,536
도시국소관(주+공)	2,204,781	2,062,547	142,234

○ 사회산업국 부서별 예산(안)

(단위 : 천원)

	'98제1회추경예산(안)	당초예산액	증감
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(사회복지과)	3,890,668	3,889,105	1,563
폐기물종합처리센타 특별회계(청소행정과)	4,628,570	4,228,570	400,000

□ 검토의견(전문위원 박 홍 표)

- '98 제1회 추경예산안은 3가지 축으로 검토할 수 있는데, ① 경상적 경비 등의 획일적 예산절감 ② 신규사업의 타당성 ③ 국

· 시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신규사업 및 당초예산액의 변경이 그것입니다.

1.경상적 경비 등의 획일적 예산절감에 대하여

○ 일반적 예산절감의 원칙 :

- i)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(비효율적인 부분의 예산을 삭감, 장기적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에는 부족액 보충)
- ii) 현실적 실효성

○ 획일적 예산절감의 장점 : 현실적 실효성의 충족

- ① 짧은 시간에 가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
- ② 예산 절감의 의지를 인식시킬 수 있다

○ 단점 : 예산운용의 효율성에 역행할 수 있다

- ① 각 부서별, 사업별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. 따라서 당초예산액이 적정하게 책정되었다는 전제하에서, 예산절감만을 목표로 한다면 정말 필요하고 기본적인 사업이나 자산취득이 시행되지 못하거나 불완전하게 시행될 수 밖에 없는 경우를 배제하지 못할 것

-가정복지과 사항설명서 120쪽 가정복지

a. 관서당경비 예산절감(20%)의 경우

- 기정 17,550천원보다 3,510천원이 삭감된 14,040천원→절감할 수 없는 당직수당 2,150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로는 $3,510/15,400 = \text{약 } 23\%$ 삭감 (다른 부서의 관서당경비 20% 삭감과 비교시 불공평)

b. 경상적경비 예산절감의 경우

가. 일반수용비

- 기정 7,276천원에서 1,819천원(약 26%) 삭감된 5,457천원 책정
- 기정의 내용 : 무등노인복지회관(운영수용비 1,620천원, 무인정보장치 사용료 2,376천원, 옥상물탱크정화 1회 300천원, 정화조수수료 1회 300천원), 노인대학 및 충효예절교실(교재발간 200부 600천원, 운영수용비 600천원), 경로당 화분가꾸기 전시회 수용비 280천원, 대한노인회서구지회지원 한문교육 1,200천원

→ 1) 무인정보장치 사용료, 옥상물탱크 정화, 정화조 수수료 등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항목이라 보이는데, 과연 어느 항목에서 어떻게 하여 1,819천원을 절감할 것인가? 2) 예산절감이 없는 중앙노인복지회관(민간위탁)과 비교할 때 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

나. 공공요금 및 제세

- 기정 4,814천원에서 962천원(약 20%) 삭감된 3,852천원 책정
- 기정의 내용 : 무등노인복지회관(전기료 기본료와 사용료 1,930천원), 상하수도료 1,440천원, 환경개선부담금 100천원, 전화요금(기본료와 사용료 1,260천원), 방화관리자 소방안전협의회비 48천원, 위험물 안전관리자 소방협의회비 36천원

→ 비교적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출근거에 입각하여 기본적인 액수만큼 당초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보여지는데, 962천원의 삭감은 공공요금 및 제세 납부에 차질을 초래하지는 않겠는가?

-가정복지과 사항설명서 126쪽 청소년복지 경상적경비 예산절감

가.공공요금 및 제세

- 기정 9,720천원에서 1,944천원 삭감 7,776천원 책정
- 기정의 내용 : 어린이놀이터 관리(16개소)(전기료15,000원×16개소×12월 = 2,880천원, 수도료 30,000원×14개소×12월 = 5,040천원), 동 청소년수련실관리(3개소) 50,000원×3개소×12월 = 1,800천원

→ 이 역시 비교적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출근거에 의한 기본적인 필요액수인 것으로 생각되는데, 1,944천원을 삭감하고도 납부에 지장이 없겠는가?

나.시설장비유지비

- 기정10,080천원, 2,016천원 삭감, 8,064천원 책정
- 기정의 내용 : 어린이놀이터 노후시설물 교체(바이킹외 13점) 600천원×14 = 8,400천원, 어린이놀이터 수도시설 보수(7개소) 120천원×7개소×2회 = 1,680천원

→ 노후시설물교체는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라 보면, 수도시설 보수의 횟수 축소조정 정도가 예산삭감을 가능케한다고 하겠는데, 어떻게 2,016천원 절감을 달성할 것인가?

-환경보호과 사항설명서 131쪽

가.경상적경비 예산절감 중 시설장비유지비

- 기정 417천원, 322천원(약 77%) 감소, 95천원 책정
- 기정의 내용 : 자동차매연 측정기 119천원, CO/HC측정기 120천원, 소음측정기 178천원

→ 시설장비유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, 무려 **77%**나 삭감하는 것은 시설장비유지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본다. 아니면, 당초예산책정이 과다한 것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.

나. 자체사업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

- 기정 17,000천원, 4,000천원(약 23%)삭감, 13,000천원
- 당초예산 : 자동차매연측정기(1식)구입 17,000천원

→ 4,000천원이나 낮아진 액수로 자동차매연 측정기 1식을 구입할 수 있는가? 가격의 급락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이 그것이 가능하다면 당초에 과다예산을 책정한 것임

- 위생과 사항설명서 144쪽 경상적경비 예산절감 국내여비

- 기정 16,560천원, 3,312천원 삭감, 13,248천원 책정
- 기정의 내용 : 심야위생업소 지도단속여비(상설전담반 $10,000\text{원} \times 8\text{명} \times 10\text{일} \times 12\text{월} = 9,600\text{천원}$, 기동반 $10,000\text{원} \times 6\text{명} \times 8\text{일} \times 12\text{월} = 5,760\text{천원}$), 유관기관 합동단속 $10,000\text{원} \times 40\text{명} \times 3\text{회} = 1,200\text{천원}$

→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1인당 여비를 줄이든지, 단속인원수를 줄이든지, 단속일수를 줄이든지 해야 할 터인데 기정예산액의 산출근거를 참작할 때, 어떠한 것이라도 과연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있겠는가?

② 예산절감의 형식성, 불합리성

- 위생과 사항설명서 144쪽 자체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

- 기정 325천원, 97천원(약 30%)삭감, 228천원 책정
- 기정의 내용 : 민원인 의자 구입 $65,000\text{원} \times 5\text{개} = 325\text{천원}$

→ 삭감액 97천원은 민원인 의자 약 1.5개에 해당되므로, 결국 의자를

3개 구입하고 32,00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. 의자 개수를 줄였어야 했음. 아니면 65,000원이라는 가격 책정이 잘못되었던 것임

③ 부서간 형평성의 문제

비교적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한 부서는 부풀린 예산 편성을 한 부서에 비해 필요한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

④ 잘못된 관행의 성립가능성

이러한 경직적·획일적인 예산절감은 앞으로 당초예산 편성시 각 부서마다 과다책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

⑤ 명목상으로만 절감, 실제로는 상사업비 등으로 보충

-청소행정과 사항설명서

가. 140쪽 경상적경비 예산절감 중 일반수용비

· 기정 244,358천원, 40,000천원 (약 16%)삭감, 204,358천원으로 책정

→ 일응 삭감된 것처럼 보이나, 139쪽 경상적경비 '97청소행정평가 상사업비(특별교부금)중 청소도구 구입(빗자루111개) 200천원과 불법투기경고판 제작(10개) 900천원 계상으로 실제절감효과는 낮아짐

나. 14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

· 기정 191,572천원, 8,871천원 삭감, 182,701천원

· 기정의 내용 : 컴퓨터 1대 1,000천원, 레이저프린터 1,500천원이 포함

→ 142쪽 '97 청소행정평가 상사업비(특별교부금)에서 컴퓨터 3대 4,500천원, 레이저프린터(B4용 1대) 1,500천원으로 되살아나고 있어 예산절감이 명목에 그치고 있다

○대안 : 각 부서별 총액의 일정비율을 삭감토록 하되, 사업이나 용도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항목을 선택, 삭감하도록 하는 것(최상의 방법은 각 부서별로 합리적인 판단 하에 자발적인 삭감이겠으나, 현실의 상황을 고려할 때 **비율**만은 강제)

2. 신규사업의 타당성에 대하여

○'98 제1회 추경 사회산업국 예산안 대부분의 신규사업은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, 다음의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음

-가정복지과 사항설명서

가. 126쪽 어린이학교 운영

'98 주요업무계획과 '98 본예산에도 없는 사항이며, 실제 운영상 수혜어린이가 일부 지역에만 국한되는 불공평성이 야기되고 있어 동 자체의 사업이라면 몰라도 가정복지과 예산사업으로서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함

나. 124쪽 모자복지위원회

모자복지법 제6조에는 '~를 둘 수 있다'라는 규정이 있는데 꼭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. 각종 위원회 정비 문제가 자주 거론되고 있고 앞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큰 바, 당분간 모자복지위원회 구성을 보류함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.

보류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인적 투자, 즉 국내여비 항목인 여성정책개발 중앙교육 및 시찰($200,000\text{원} \times 2\text{명} \times 1\text{회} = 400\text{천원}$) 예산은 줄이지 않음이 좋을 듯함

-청소행정과 사항설명서

가. 139쪽, 가로청소환경미화원 목욕수당(12월) 29,400천원

나. 142쪽, 가정청소대행사업비중 목욕수당 91,800천원

→ 이들의 산출근거에 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함

3. 국·시비보조 확정 내시에 따른 신규사업 및 예산 변경

○ 국·시비보조가 확정 내시되면 그에 따라 구비가 일정비율 책정되어 신규사업을 시행하거나 당초예산액이 변경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, '98 제1회 추경 사회산업국예산안에서 큰 쟁점이 될만한 사항은 거의 없었고 다음의 몇 가지만 언급을 할 수 있겠습니다.

-가정복지과 사항설명서 124쪽, 마루동 상무경로당 개보수 20,000천원(시비)

경로당개보수 (33개소)에 40,000천원 (시,구비 각각 50%)이 책정되어 있는데, 아무리 시비보조금이라 하더라도 상무경로당 1개소 개보수에만 그 1/2인 20,000천원이 사용되는 것은 형평성의 측면에서 도저히 납득이 안됨

-사회복지과 사항설명서

가. 117쪽, 저소득층 취로사업

· 신규 195,832천원(국 97,916천원, 시 48,958천원, 구 48,958천원)중

취로인부임(8,325명) 191,475천원→23천원/1인→277명이 일당 23천원으로 360일 동안 취로할 수 있는 금액으로 그런대로 괜찮은 수준이라 생각됨

- 다만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 긴요하고 종사자들에게 성취감을 줄 수 있는 취로 프로그램을 개발·시행해야 할 과제

나. 117쪽, 한시적 생활보호자자녀 학비보조(199명)

- 신규 103,097천원(국 82,477, 시 10,310천원, 구 10,310천원)→약 518천원/1인
- 115쪽, 영세장애일자녀 학비보조(6→26명) : 경정 10,350(국 8,280, 구 2,070)으로 당초예산액보다 7,256천원 증가→약 398천원/1인
- 양자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

다. 118쪽, 한시적 생활보호자 구료비(391명)

- 신규446,912(국 357,530천원, 시 44,691천원, 구 44,691천원)→약 1,143천원/1인
- 이 역시 거택보호자구료비,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등과 비교하여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

○ '97정기회 본예산 검토보고에서 지적했던 문제로서 국·시비보조금 감액시, 특히 복지사업분야에서 반드시 구비액수도 낮추어야만 하는가?→좀 더 능동적인 접근이 필요

○ 기타 절감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항목(예)

- 각목명세서 284쪽, 운영수당(충효예절교실 강사수당 1,500천원, 노인대학 강사수당 1,440천원, 대한노인회서구지회 노인대학

강사수당 2,100천원)과 각목명세서 298쪽, 운영수당(구 청소년 공부방 강사수당이 3,600천원)의 경우→시간이나 일수, 또는 시간당 강사료를 축소조정함으로써 효과적인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됨

- 각목명세서 218쪽, 임차료 환경전시관교육 수송차량 대여 100,000원×5대 = 500천원→교육인원수 축소조정으로 대여차량수를 줄여 예산절감 가능
- 이상과 같이 3가지 측면에서 '98 제1회 추가경정 사회산업국 세입·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, 행정자치부의 '98 예산비목별 절감권고를 결코 무시할 수 없어 관서운영비, 경상적 경비만을 일률적·획일적으로 삭감하는 것을 이해할 수는 있으나, 이른바 자치시대에 걸맞는 발상의 전환을 발견할 수 없어 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. 즉, 중앙정부의 권고는 말 그대로 '권고'일 뿐 우리는 우리 실정에 가장 적합한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·집행해 나가겠다는 생각이나 중앙정부의 권고 기준에 따른 평가 등에 크게 연연해 하지는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.
- 아무쪼록 이 검토보고가 예산심의, 나아가서는 구정발전에 조금 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